

2021. 12. 02(목). 10:00
제28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전용균 의원 등 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확대 정비하고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확대 정비(안 제8조)
- 나. 방범시설 설치기준 마련(안 제8조의2)
- 다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1) 예고기간: 2021. 11. 12. ~ 2021. 11. 19.(9일간)

2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확대하고, 방범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,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2021년 12월 02일

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배